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 2003년 4월1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4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2. 11. 29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 인하와 연체료 부과기간 상한설정, 관련조문의 변경사항을 개정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개선사항으로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대부료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는 등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도지사가 시장·군수로 하여금 도유재산사무를 위임하면서 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사용료·대부료·처분대금·가산금 또는 변상금의 귀속비율을 당해수입금의 100분의 30에서 사용료·대부료는 100분의 50, 변상금은 100분의 40, 매각대금은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은 100분의 10으로 조정함.

(안 제3조제2항)

나. 조례 제3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계법령이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지정함. (안 제4조제2항)

다.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허가조건을 명시함. (안 제13조)

라. 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에 있어 이자율이 매각대금 잔액에 연 5퍼센트 내지 8퍼센트 부과에서 연 4퍼센트 내지 6퍼센트로 인하함. (안 제21조제1항, 제2항, 제3항)

마.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전년도 연간대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시 대부료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였거나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경우에는 제외함. (안 제23조)

바.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조정. (안 제25조의2)

사.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일률적인 연 15퍼센트에서

-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로 조정하고,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납기일로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 (안 제28조제1항)

아.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 및 인용법령 변경. (안 제31조의2, 제38조의2)

3.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2. 11.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및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 인하와 연체료 부과기간을 상향조정하고,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도유재산 사무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사용료·대부료·처분대금 등의 귀속비율 조정 및 감사원 감사결과 개선사항의 조정등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하는 것임.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기도에서 시달된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적합성에 문제점이 없음.
-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도유재산 사무위임에 따른 사용료·대부료·처분대금 등의 시군 귀속비율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시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됨.
- 참고적으로, 도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경우 자치단체 귀속비율이 당해 수입금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됨으로서 지난 2002년 대비 67% 늘어난 약 700만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발생하게 됨.

- 안 제13조에서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 허가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 예방코자하는 것으로서 발전적인 조치로 보여짐.
- 안 제21조에서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을 각각 1~2%를 하향 조정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제23조에서는 2개년도 이상 계속해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전년도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될 때, 대부료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영리목적의 경우 농경지를 제외하고는 특례적용에서 제외토록 하였음.
- 안 제28조에서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료 부과기간의 상한기한을 정한 것은 공유재산관리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한 조치로 사료되며, 안 38조의2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변경한 사항임.
- 이상과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관련조문의 개정 등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